

아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수

■ 주 간 제

30 호

• 통 권

제 1 5

2 9 호

내 부 회

계관리

제 도

감

리

로

 \sqsubseteq

맵

마

련

구독료

월

3

원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째

eAnSe.com

온리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빙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7/ 28 통권 1529호

2021/ // 28 중권 1529오

코로나백신과 헝가리의 저력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경영관리임직원 깨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보고와 재무 제표 외부감사보고서의 비교

CFO·회계실무자·쪼세전문가 정보

-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 사례 추가 공개
-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 예고
-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게 공시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매출채권 염가 할인매입 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은 금융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 세 면세임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 부동산의 전액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계산과 유리·불리 절세효과 >

부동산 전액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주택 숫자, 취득원가 등 경우별로 달라요.

102210		J 0 1 L— L 1—
부동산상황	현 시가 15억원, 취득원가(모든비용 등) 6억원, 전세금 7.5억원 자녀 30세, 이전의 선증여 없음(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 생략)	세금합계
□전액증여	증여액 15억원 - 5천만원 공제 = 14.5억원의 증여세 : (1억 ×10% + 4억×20% + 5억×30% + 4.5억×40%) ×97% = 4.074억원	Ⅱ 4억 740만원
② 부담부 증여	증여액 15억원 - 전세금 7.5억원 - 5천만원 공제 = 7억원의 증여세(1억×10% + 4억×20% + 2억×30%) × 97% = 1 억 4550만원	증여세 1억4550 만원
1세대 1주택	9억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 전세금 7.5억원(= 양도가) 이므	1.455억원
(유리)	로 양도세 없음	Ⅲ보다적음
1세대2주택 (유리)	전세금 7.5억원(양도가) - 취득원가 안분액 3억원(6억원 ×50% = 전세금 7.5억원 ÷ 시가 15억원) = 양도차익 4.5억원 : 기본세금 1억5460만원 + 10% 중과세 4500만원 = 1억 9960 만원 × 1.1배(지방세) = 2억1956만원 + 증여세 1억4550만원	3.65억원 <u></u>
1세대3주택 (불리)	": " : ' 과세 9000만원 = 2억4460만원×1.1배 = 2억6906만원 + 증	
최근 취득	최근취득원가 9억원 : 전세금 7.5억원 - 취득원가 4.5억원(= 9	
차액 적은	억원×50%) = 3억원	2억8256만원
경우	(2주택) 양도소득 3억원 : 기본 9460만원 + 10%중과 3000만	Ⅲ보다 적음
(유리)	원=1억2460만원×1.1=1억3706만원+증여세1억4550만원	
과거 취득차액 큰 경우 (불리)	과거 취득원가 3억원 : 전세금 7.5억원 - 취득원가 1.5억원(= 3 억원×50%) = 6억원 (2주택) 양도소득 6억원 : 기본 2억1260만원 + 10% 중과 6천 만원 = 2억7260만원×1.1 = 2억9986만원 + 증여세 1억4550 만원 : 차액이 커서 양도세 많기 때문	4억4536만원 ፲፲보다 많음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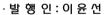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중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29 호 / 주가 30호

2021. 7. 28. (수)

차



· 제 작 : ㈜ 안건쪼세정보

· 대표전학: 02) 829-7575 FAX: 02) 718-8565

에정보 757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①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동산의 전액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계산과 유리 · 불리 절세효과	丑川
긴 급 시 사 해 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속가능경영보고와 재무제표 외부감사 보고서의 비교	2
C E O 에 세 이	코로나백신과 헝가리의 저력	3
세 무ㆍ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보험상품 평가 - 렌탈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대량 매입 시 자산등록 가능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규모 및 구성비중(2018 기준)	9 10
직장인Survival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 10가지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전법령부가-40, 2021.01.22)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법인-2781, 2020.11.30) 	12
세 정 뉴 스 와 해 설	7월부터 사업자 소득자료 월별 제출···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1년간 면제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매출채권 염가 할인매입 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업은 금융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임	12
세 무 정 보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15
회 계 정 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공시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22 28 35 44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48

전 직 원 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속가능 경영보고와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의 비교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응인회계사 · 성영약학사(마케닝조세인학, 회계성영약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ESG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① 공시목적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공정하고 중립 적으로 정보전달	기업의 구매, 지출, 채용, 제조, 판매 등 전과정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지속가 능사회기여보고
② 공시대상	기업내외부의 이해관계자(자금대여 자와 자본투자자 요구) (수동성)	주로 소비자, 구매자, 고객 및 사회단 체, 정부(능동성)
③ 정보의 개념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 정량적 재 무숫자	비재무정보, 경영 전반의 정성적 서술
④ 지향시점	과거지향 재무정보(공시일자 바로 직전 2~3년)	현재 기반한 미래지향정책(환경,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성)
⑤ 회계주안점	재무회계, 회계감사, 재무관리	원가회계, 관리회계, 생산·마케팅관리
⑥ 측정대상	주로 실물자산, 계약부채 등의 물 적자원과 유형자산 중심	장부 이외 무형자산, 사회적 책임비용, ESG 책무 및 인적자원 중심
⑦ 통일된 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일반회계기준 등(GAAP)	여러 기준 공존 : WEF(세계거래소 연 맹), GRI(지속가능지표), TCFD(기후지 표), 지속가능위원회지표
⑧ 기준제정	한국회계기준원(K-IFRS 등)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 모범규준)
⑨ 주요 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 자본흐름표, 주석 등	리더십과 거버넌스, 기업위험관리, 운영 과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제품탄소유 해성, 온실가스, 탄소배출 등
⑩ 외부인증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이 회계법 인의 고유업무영역으로 함	아직 구체적 입법 없음(내부회계·외감 과정에서 관련정보 입수·계산 가능)

경영진코너

코로나백신과 헝가리의 저력



이해익 원장: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코로나백신 중 DNA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 해주는 mRNA는 아데닌 · 구아닌 · 사이토신 · 유리딘 4종의 염기서열로 구성된다한다. 헝가리 대학생이었던 카탈린 카리코박사는 mRNA를 이용해서 백신과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꿈을 안고 1985년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향했다. 카리코박사에게 코로나를 예방하는 mRNA백신은 40년 집념의 결산이었다. 그리고 mRNA기반 차세대 항바이러스 및 항암 의약품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다.

코로나백신 탄생을 알리는 바이오앤테크·화이자백신이 임상3상 결과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카리코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전 세계 수십억명의 삶을 바꿀수 있어 기쁠 뿐"이라고 말했다. 노벨상 수상강연의 한 대목처럼 들린다. 21세기 오늘날 인류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괴롭히는 코로나의 백신을 창조한 주인공이 헝가리 출신이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헝가리는 북으로는 폴란드, 동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서쪽에는 오스트리아, 남으로는 발칸반도 등 7개국으로 둘러싸인 남한 크기의 내륙국가다. 인구도 960만명 정도의 한국보다 5분의1정도 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다. 그런데도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낸 나라라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동양의 유목민족인 마자르족이 동유럽 평원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된 헝가리는 과학과 수학의 천재들을 대거 배출한 대단한 나라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부러워해 왔다. 미국 인텔을 일군 CEO 앤드루 스티븐 그로브(Andrew Steven Grove)도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다. 비타민C를 발견해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센트뢰르지와 컴퓨터, 양자역학, 게임이론등에 기여하고 원자폭탄을 설계한 폰 노이만, 홀로그래피의 창시자 데니스 가르보(노벨물리학상, 1971년도)가 모두 헝가리인이다.

필자의 헝가리 첫 방문은 1990년대 초에 겪었다. 헝가리 유황소금에 관심이 쏠린 비즈니스맨 세 사람과 함께 네덜란드의 유통구조를 살피면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다. 물론 장거리 비행시간에 헝가리 관련 자료를 깊이 공부했다. 그들을 만나면

대화를 풍부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그런데 헝가리 같이 한국에 덜 알려진 작은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0여명이라는데 놀랐다.

1995년 연구주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와 거듭된 연구비 수주 실패로 대학측은 헝가리 인 카리코박사에게 떠나든지 아니면 교수직 강등을 통보했다. 교수직 희망 연구자에게는 최악의 굴욕이었다. 암 진단까지 받은 그녀는 강등된 채 연구보조인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mRNA부작용 문제에 도전했다. 그러나 대학시스템에서는 평생 꿈인 mRNA백신을 시도할 기회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다.

2013년 그동안 강등되었던 그녀를 교수직으로 복직시켜준다는 대학측의 제의를 뿌리치고 카리코박사는 독일 바이오엔텍에서 직접 백신개발 지휘봉을 잡았다. 그녀의 혁신적인 연구덕분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전 세계에 mRNA백신을 공급하며 인류는 펜데믹 종식에 다가가고 있다. 그녀에게 찬사를 보낸다. 국방예산을 연 50조원 이상 쓰는 한국에서 감염병 대비예산도 '인간안보' 필수 비용임을 국민들은 지지해야 한다.



보험상품 평가

보험성 적금상품은 결산일기준 해지화급금 기준으로 평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제적 법조항과 법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시 세무상 손금불산입처리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법인세법은 원가주의가 원칙으로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3 조에 규정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질의하신 보험성적금상품의 평가는 법인세법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회계처

리하는 것이므로 세법에 관련 규정은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입니다.

렌탈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대량 매인 시 자산등록 가능여부

당사에서 노트북 140대를 렌탈하여 약 30개월정도 사용하고, 리스기간 만료로 해당 노트북을 구입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중고로 매입하는 대량의 노트북(비품)에 대해 자산처리를 해서 비품에 대한 상각을 해야하는지. 아 니면 그냥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거래단위별 취득기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면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기간 만료된 최중구 입가가 노트북 한 건당 100만원 안되면 당기비용반영함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방법 관련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항목 중에 근속연수 중 제외 월수 부분이 있는데 제외 월수 작성방법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는다고 되어있는데 퇴직금 산정이라는 부분이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할때 제외된 기간의 월수 인건지 아님 입사일로 퇴사일까지 해당하는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의미하며, 근속연수 제외월수는 근속연수기간 중 근속연수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www.eAnSe.com 5 $2021 \cdot 07 \cdot 28$

보 고 자 코

초 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A업체와 판매부스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월 고정 유영비 + 싴적 및 관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직원, 당사)를 A업체로 부터 반을 계획입니다.

- 1. 월 고정 운영비와 부스임대료등 → 세금계산서 발행
- 2. 실적 및 관리 평가 인센티브 →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 적용 (A업체 의견)

2번항목이 맞는지요? 아님 1번과 동일하게 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수출이나 국외에서의 용역제공, 외화회득 재화나 용역공급이

법인입니다.
A업체와 판매월 고정 운영
1.월 고정 운
2.실적 및 관
2번항목이 및
부가가치세기
해당됩니다.
따라서 판매를 따라서 판매부스 위탁관리와 관련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박급하여야 한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소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말 정산 관련하여 비과세 근로 소득 중 저희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로 근로자에게 결혼 및 가족 사망으 로 인해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10만원 이 상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명목으로 결혼, 조의, 출산, 입원 시 지원하는 경조금의 경우 경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리인코너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금전의 수수를 동반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나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회계세무 실무자라면 누구든지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들이 존재하는데,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상품권거래, 입회금, 지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 연동되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을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가 애매하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과되는 것인데 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파손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가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의 해지로 공급자가 받는 위약금, ③ 공급기일 등의 지연으로 인해 공급받는자가 받는 지체상금, ④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한 변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손해배상금・위약금・지체상금・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계약의 파기 또는 재화 등의 파손에 따른 배상의 성격으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인정 되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거래가 된다.

따라서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입금표 등의 영수증만 주고 받아도 세무상의 문제는 없다.

♣ 서삼-2283, 2007.08.16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371, 2001.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 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225, 2007.01.23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주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663, 2006.04.05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

상품권 등의 화폐대용 증권

수표나 어음, 상품권 등의 화폐를 대용하는 증권은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화폐 대용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서삼46015-10145, 2001.9.6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당해 상품권을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입회금

체육시설, 콘도, 골프장 이용을 위한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받기로 한 입회금도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부가46015-1831, 1995.10.5.

휴양시설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屋

----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과세표준	최대소득공제한도	세율	최대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500만원	6.6%	330,000
1,200만원~4,600만원 이하	500만원~300만원	16.5%	825,000원~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300만원	26.4%	792,000원
8,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300만원~200만원	38.5%	1,155,000원~770,000원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41.8%	836,000원
3억원~5억원 이하	200만원	44.0%	880,000원
5억원 초고		46.2%	924,000원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연도의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500만원(4천만원 이하), 300만원(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에 적용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과세대상	적용세율		
메즈즈카 시니 카	중소기업 주식	10%	
대주주가 아닌 자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대주주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	30%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규모 및 구성비중(2018 기준)

OECD구분명 (코드번호)		대한민국		OECD평균	
		GDP 대비%	재산세 구성 비중	GDP 대비%	재산세 구성 비중
	재산세(4000)	3.10	-	1.86	_
	부동산 보유세(4100)	0.82	26	1.07	58
	금융 및 자본 거래세(4000)	1.89	61	0.45	24
재산세 제비	상속 · 증여세(4300)	0.39	13	0.13	7
세부 항목	순자산세(4200)	0.00	0	0.16	9
	비반복적 재산세(4500)	0.00	0	0.04	2
	기타 재산세(4600)	0.00	0	0.01	1
양도소득세(1120)		0.95	-	0.15	-
합계		4.05	-	2.01	-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기업 주요 차별 조항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4)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제121조의2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30조)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
기타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8)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 10가지

1. 부지불식간에 새는 돈을 막아라

돈을 모으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잘하게 새는 돈을 막는 것이다.

2. 절약이 투자를 이긴다

재테크는 크게 절약, 저축, 투자로 구분된다. 저금리 시대로, 정기예금 이자율도 말이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3. 빚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빚이 있다면 저축을 하는 것보다 먼저 갚는 것이 현명하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적어도 1∼2%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

4. 신용카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많은 가계가 일단 지출한 뒤 일을 해서 돈을 갚는 패턴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빚을 지게 된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신용카드이다.

5. 재테크이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자산 증가를 위해서는 일단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6. 수수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얼핏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각종 금융 수수료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7. 과다한 보험료 지출을 줄여라

보험은 꼭 필요한 존재지만, 한편으로 잘못 가입한 보험은 재테크의 최대 복병이다.

8. 갑작스러운 지출 이벤트에 대비하라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갑작스런 지출에는 반드시 대비해 놓아야 한다.

9. 꾸준히 정보분석 능력을 키워라

재테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만 보아도 지천에 널려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정보를 가려내는 지혜와 그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부지런함이다.

10. 돈에 꼬리표를 붙여라

돈을 사용처별로 분리해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심리적 관리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 사용처가 달라지면 소비를 꺼리게 되고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매출채권 염가 할인매입 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은 금융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 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가 면제된

사전법령부가-40, 2021,01,22

집 의

-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8월 채권매입업을 업종 추가하여 매출 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매출채권 양도를 원하는 사업자(이하 "채권양 도자")가 팩토링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 스를 신청하면 신청법인이 신용평가 및 거래사 실 확인 후 할인율을 채권양도자에게 통보하고
- 채권양도자의 승인과 채무자의 동의에 따라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며 신청법인이 할인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채권양도자에게 지급함
- 채권양도자는 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매출채 권에 제반된 권리가 소멸하고 채무자는 거래약 정상 대금 상환일 이전까지 신청법인에게 대금 을 상환하여야 함

질의내용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 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 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 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기준법령국조-270, 2020,11,30

▮질 의

- 자문대상법인은 축전지 제조용 리튬화합물 및 관련 원재료의 제조·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
- 자문대상법인은 '16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 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16년 중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 받았으며
- '17~'19년 3차례에 걸쳐 추가 투자를 실시하고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았음
- 자문대상법인은 '19.11.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3차)을 받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음(1차, 2차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감면받았음)

질의

- '18.12.31. 전 조세특례제한법 § 121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19년 중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절정을 받은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19.1.1.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적용배제(조 세특례제한법 § 121의2②)

▮회 신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법인-2781, 2020.11.30

▮질 의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AAAA연구원의 부설 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인 "****에너지연구원 (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8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점 법인으로 등록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 가핵융합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 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직변정 전의 사업연도가 계 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 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서면전자세원-5881, 2021,01,04

▮질 의

• '21.1.1일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 애완동물 사료"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음

질의

• '21.1.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오픈마켓)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 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2021 \cdot 07 \cdot 28$ www.eAnSe.com 13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7월부터 사업자 소득자료 월별 제출···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1년간 면세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7월부터 매월 소 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 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용근로자 소득자료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시업자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신 고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 등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시업자도 추후 국회 논의 통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시업자(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의 경우 1년 간기상세를 면제하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내려간다.

다만, 지급명세서 내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기산세 적용 대 상에서 제외된다.

'탄소중립 디지털' 사업구조 개편 시 금융·세제 지원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으로 사업 구조를 바꿀 경우 금융·세제 지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 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제 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롭게 지원되는 대상은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상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 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등 좀 더 유연하게 사업개편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융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000억 규모 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자산 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 다"고 말했다.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 연간 1.3조원 감면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지난해보다 신규 고용을 늘렸을 때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지를 신규 고용할 경우 우 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규채용 청년 정규직 1인당 대기업은 400 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 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 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기 업은 적용받지 못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18년 도입돼 2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지만, 감면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 등 기업들의 연장요구가 많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감면규모는 1조3103억위에 달한다.

앞서 종료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됐으며, 코로나 19 기업 지원 취지에서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날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2021. 7

-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4개월, 그간의 추진경과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 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됩니다.
 - * 일용근로자 (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월)
 - **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연→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 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추진배경 및 그간이 추진경과

-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등 고용위기 속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요건인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이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자
-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고, 계획수립-신고집행-사후 관리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대한 많은 사업자들이 제도변경을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 국세청 홈페이지·SNS 카드뉴스, 유관기관 협업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청 지방청 세무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소득자료관리TF 소득자료관리TF 추 ① 제출안내사후관리 계 ① 각 지방청별 신고관리계 ① 소득자료 수집・관리 집 진 획 수립 획 수립 행 준비 체 (2) 홍보총괄 계획 수립 □ 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 ②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 ③ 전산인프라 구축 맞춤형 홍보 집행 ③ 영세사업자 위한 도움 ④ 유관기관 협업 ③ 업종별 현황 분석 창구 운영 준비

□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로서,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고용 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①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 □ '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 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종전	변경 (7월 이후 소득지급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별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제출	▶ 매월 제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추후 국회논의 예정)	▶ 연별 제출	· 배글 제출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 한편, '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월)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② 제출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 □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 감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됩니다.
- □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1년 7월~'22년 6월 지급소득) 면 제됩니다.
 -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 □ 한편,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고용법§77의6)

코드번호	종전	개정	특고 유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리〉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리〉	교육교구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940923	〈분리〉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
940924	〈분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설〉	방과후강사	방과후강사

○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고편의 향상

① 신고안내문은 한 장으로 받아보세요

- □ 8월(7월 소득지급분) 안내대상자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약 140만 명이며,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 * (종전) 일용·간이 각각 안내 → (변경) 통합하여 1장의 안내문으로 발송

② 영세사업자는「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으로 쉽게 신고하세요

- □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 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7월 말 개통예정).
-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출 가능

Ⅰ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특징 Ⅰ

< 종전 >		✓
소득자 정보를 제출할 때마다 입력		☑ 최초 1회 소득자 정보 등록하면 매월 자동 입력
세액을 사업자가 직접 계산하여 입력	→	☑ 근무일자,지급액만 입력하면 세액 자동 계산
제출할 때마다 지급액 등 신규 입력		☑ 전월 제출자료 불러오기로 변경사항만 입력

③ 복지지원 서비스는 「복지이음」을 이용하세요

- □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던 메뉴를 모아「복지이음」포털*을 신설하여,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7월 말 개통예정).
 - *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자녀장려금 등 포함

향후 계획 및 당부말씀

-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세무대리인·관련업계 간담회 등 현장밀착형 소통, 개별안내 강화, 고용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신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제출하신 소득자료는 빠른 복지지원의 근거이자 토대가 되오니,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께서는 변경된 소득자료 제출주기에 맞춰 사전준비를 부 탁드립니다.
-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 내용, 소득자료 전자제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나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구 분	연락처		
소득자료 전자제출 관련 문의	126 → 1번(홈택스) → 3번(신고·납부) → 2번		
오득자표 선사세물 선인 군의	(지급명세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취지·내용 등 문의	☎ 126 → 2번(세법) → 3번(원천세)		

참고 1 - 주요 문의사항(Q&A)

-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2. '21년 6월까지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 '21년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 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한편,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셔야 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월)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3.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요?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합니다.
 -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4.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업종코드	종전	개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 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 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 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940923	〈분 리〉	대출모집인
940924	〈분 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 설〉	방과후강사

○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 2 -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 □ 인건비 간편제출 흐름도
 - 홈택스로 로그인한 후 사전에 사원 정보를 등록하고 지급일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지급명 세서 자동 생성
- □ 인건비 간편제출 요약
 - (사원 관리) 최초 1회 사원정보*를 등록하면 매월 급여 입력 시 소득자 인적사항을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
 - * 소득자 유형(일용/간이), 내·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 (급여 관리) 「전월 제출자료 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변경분만 수정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자동생성·제출
 - (현황 조회)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소득자별 급여 현황 등 조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2021. 7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②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 □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19년부터 단 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 '18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감리는 미실시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 ('23년)
- **2**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3년), 5천억원 이상('24년), 기타('25년)
 -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21년 4/4분기)
- □ 이에 따라, '19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업과 감사인들은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

「내부회계관기제도 감기 로드맵」 주요 내용

가. 계도기간 부여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겠습니다.
 - * 개별·별도재무제표 : 3년간 계도위주 운영 / 연결재무제표 : 2년간 계도위주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개별·별도 재무제표]

계도 위주 📗 본격 감리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일 이사	거드		감사 의무화												
2표면 이경	2조원 이상 검토		계도 위주			본격 감리									
					_										
[[T O O T O					감사 의무화									
5천억원 ~ 2조원		검토		네도 위주	5	본격 감리									
1천어의 2. [천어의 경도 감사 의무화															
1천억원 ~ 5천억원 검토			エ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710101 DIDL - 71C					감사 의무화										
1신박권 비민	1천억원 미만 검토			계도 위주 본격 감											

[연결 재무제표]

[연결 제무세표]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_			감사 의무화*					
2소년 이경	! 비성 -						위주	본격 감리			
					·						
5천억원 \sim 2조원	감사 의무화*										
)전략면 * 2조년		·				계도 위주 본격 감			본격 감근	1	
1천억원 ~ 5천억원	감사 의무화*										
1선덕전 10 3선덕전								계도	위주	본격	감리
										-	
1천억원 미만				_		감사 의무화*					
1연극면 미만								게ㄷ	이즈	보건	フトコー

* '21년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를 1년씩 연기할 예정

나.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운용 방향

-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 □ (감리 착수)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 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 * 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감리 미실시, **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 미실시
 - ❷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합니다. (참고2)
- □ (감리 범위)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
 -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 검합니다.
 - *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예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
- □ (감리 조치)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 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감사인 감리시 >

- □ (감리 범위)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 를 점검하고,
-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
 - ※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①품질관리시스템 감리 및 ②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
- □ (감리 조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를 합니다.

다. 본격 감리시 감리운용 방향

-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 □ (감리 착수)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합니다.

- * ① '고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
- □ (감리 범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합니다.
-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예 : 운영 테스트의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
- □ (감리 조치)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 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감사인 감리시 >

- □ (감리 범위)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며,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 □ (감리 조치)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

3 기대 효과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 □ 금번에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나 가겠습니다.
- □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1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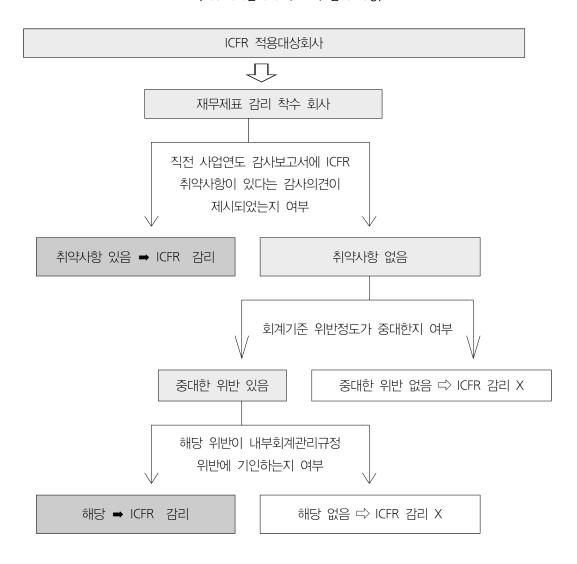
-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
 -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 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
- '감사'는 내부통제 관련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 또는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 증절차 수행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

구분	검 토	감 사
검증	대표이사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수행	질문 위주	통제절차의 재수행.
절차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문서검사, 관찰, 질문

붙임 2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리 대상〉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금융감독원, 2021. 7

1. 개요

-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는 최근 지적된 '20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66건*의 지적사례를 포함하여 총 81건이 공개
 - * '19.12월 29건('18~'19년 지적사례), '20.8월 37건('15~'17년 지적사례)
- □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1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2
 - *1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008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2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❷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❸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④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⑤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주요 감리 지적사례의 내용

- □ 금번 공개하는 '20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 · 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 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임

〈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개)

공개 시기	'19.12월	'20.8월	'21.6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18년~'19년	'15년~'17년	'20년	'15년~'20년
공개사례 수	29	37	15	81
❶매출·수익인식	3	12	4	19
② 재고자산	3	1	-	4
❸지분·금융상품	4	6	5	15
④ 유·무형자산	4	4	1	9
⑤ 기타자산·부채	8	5	2	15
③ 기타	7	9	3	19

【참고】주요 감리지적사례

- □ 매출·매출원가·수익인식 관련
- A사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 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처리하고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
- B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원재료)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
- □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
- C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 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1/3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D사는 지분법으로 처리하던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실액이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유형자산

• E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회사 자금의 횡령을 위해 차명 회사에 허위의 공사용역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하고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함

□ 파생상품자산 · 부채

• F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파생상품자산을 과소 계상

- G사는 종속회사 전환사채의 투자자에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파생상품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3.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 □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 이 가능
 -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붙임2)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4. 향후계획

- □ '21년 하반기 중 IFRS 전면시행 첫해인 '11년도부터 '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 편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
- □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

붙임 1 - 2020년 감리 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1 목 록

- ① 매출·매출원가·수익인식 등 관련(4건)
 - 1. FSS/2106-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2. FSS/2106-02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 3. FSS/2106-03 매출 허위계상
 - 4. FSS/2106-04 수익인식(총액·순액) 오류

②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3건)

- 1. FSS/2106-05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 2. FSS/2106-06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3. FSS/2106-07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 ③ 유형자산 및 기타자산(3건)

- 1. FSS/21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 2. FSS/2106-09 선급금 허위계상
- 3. FSS/2106-10 대여금 허위계상

4 파생상품자산·부채(2건)

- 1. FSS/2106-11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 2. FSS/2106-12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5 기타 지적사항(3건)

- 1. FSS/2106-13 매출채권 허위계상
- 2. FSS/2106-14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 3. FSS/2106-15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2 예 시

감리 지적사례 FSS/2106-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4.1.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해외 종속회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시도하였다.

회사는 '14년~'16년 기간 중 실제로는 해외 종속회사(B사)에 단순 물류이동하거나 실제 배송하지 않은 품목 등을 재고자산수불부 상 출고로 처리하고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 차명회사(페이퍼컴퍼니) C사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을 계상하였다.

허위 매출에 따른 매출채권이 기간 경과에 따라 연체 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등 문제가 되자, 회사는 '16년 중 해외 종속회사 B사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송금하고 B사는 이를 C사에 송금(B사는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뒤 B사로부터 동 자금을 회사가 매출채권 회수 명목으로 다시 수취하는 방식으로 꾸며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하였다.

〈허위 매출 및 매출채권 회수 거래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판매처에 실제 출고가 없었음에도 재고자산을 전산상 출고처리, 증빙위조 등의 방법으로 매출로 허위 계상하고 허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송금하고 이 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고 대손충당금환입(이익)으로 회계처 리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47(수익의 인식)에 따르면,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문단14 및 문단18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며,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 이러한 사항이 해소된 때에 수익을 인식하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출고 등 없이 허위의 증거자료를 통해 인 식한 회사의 매출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 ② 감사인은 매출계정 등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 시 통관서류 등 해외매출에 대한 외부 물류이동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가 생성한 내부증빙(Invoice, 팩킹리스트, 선하증권 등)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주문서(PO)와 매출원장 대사, 매출품목에 대한 재고자산수불부 출고내역확인 등 회사제시 회계자료의 완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품목별 매출증감내역 등의 분석적 검토도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와 관련해서는 직접 외부조회서를 송부하지 않고 회사 담당자가 발송하도록 하거나, 사본(이메일 등)으로만 발송하거나 회신하는 경우에도 조회처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영업환경, 회사의 재무상황 등 제반 조건을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 거래처에 대한 외부조회의 경우 조회처 확인 등 감사절차를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감리 지적사례 FSS/2106-07 :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및 제1036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7.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4년 중 벤처기업투자목적회사 B사(비외감 회사)의 지분 49.9%를 취득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17년 중 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면서회사의 신규 경영진은 B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B사는 회사를 포함한 기존 주주로부터 투자자금조달이 어려워져 '17년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17년말 회사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위해 B사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자료를 요청하자, B사는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반영하지 않아 순자산과 당기손익이 과대계상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회사는 B사가 제시한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 없이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7년말 관계기업 B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여 관계 기업투자주식에 명백한 손상징후가 존재하였음에도 손상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B사가비외감 회사이며 더구나 가결산재무제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뢰성 검토 없이 지분법

을 적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7 및 문단42에 따르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순자산이나 당기손익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어야 하며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손상인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B사 투자주식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B사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B사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자산(대여·선급금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수행하면서 거래와 무관한 자료를 적격증거로 인정하고, '17년 발생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로 '16년 자료를 제시하였음에 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대여금의 자산성을 인정하였으며, 대여·선급금의 실재성과 회수가 능성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계약서 및 자금이체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감사절차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관계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뢰성 검토 수준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 중단, 공정가치 하락 등의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실 인식 등을 회피하기 위해 왜곡표시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시할 유인이 존재하므로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2021. 7

-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 *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 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
- '19년부터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 중점 점 검분야를 전년도 6월 중에 미리 공표함에 따라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작년부터는 중점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 의할 필요

(2022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종속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 *실적악화가우려되는 업종유의
- 손상평가(회수가능가액추정등) 수행 •평가기법및투입변수등의합리적인근거
- ※ (업종)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도·소매업, 항공운송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금융부채 분류에 따른 측정의 적정성 *당기손익-공정가치 부채 금융보증계약 등
- 금융부채 관련 주석 공시 *금융위험(유동성위험,시장위험 등) 질적·양적 정보
- ※ (업종)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송업

특수관계자에 대한수익인식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 *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공시

※ (업종) 전 업종

중점점검

2022

회계이슈 영업이익표시 및 영업부문정보공시

-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 표시 *재무구조취약기업등유의
- 영업부문 관련 주석 공시
- * 보고부문별 정보(당기손익, 자산 등) 및 지역별, 주요 고객별 수익 등에 대한 정보
- ※ (업종)전 업종

개 요

-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게 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
- 금번 선정된 회계이슈는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2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 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 □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유의하여 회사는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인도 회 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 특히, 작년부터 회계이슈 관련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니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
 - ※ 실제 심사대상 선정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2022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1. 종속 ·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 (선정배경)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 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 특히, 무자본 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 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 빈번
- □ (대상업종)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분류코드*	해당 업종
C190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4000	1차 금속 제조업
C3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G00000	도매 및 소매업(45~47)
H51000	항공운송업
J00000	정보서비스업(58~63)
N75000	사업지원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 □ (선정기준)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손익 변동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 (회계처리* 유의사항)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 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
 - * 자산손상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21.1.11. 보도)을 참고하고 감독당국은 동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
- ①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 * 예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업황 등)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투자주식 의 장부금액이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 ②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 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

회계오류 예시

- A사는 종속기업 甲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 과정에서, 중단(예정) 사업부문의 매출 추정액을 포함하고 실제원가율과 차이가 큰 목표원가율을 적용하는 등 미래현금흐름을 과대 추정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고.
- 사업결합을 통해 인수한 종속기업 ∠에 대해서도, 인수 후 지속적인 적자 발생 및 투자 주식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순자산가액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 행하지 않아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 ② B사는 무자본M&A를 통해 인수한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인터넷단말기 제조사인 ◇◇사 투자 명목으로 관계기업 丙사에 송금한 후 이를 회수가 불가능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사에 대여하도록 하였음에도 丙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 丙사는 丁사에 대한 대여금을 손상처리 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 □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 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 는지 점검 필요
- □ (대상업종)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全 업종을 대상
- □ (선정기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고객과의 계약별 수행의무 식별, 변동대가 등의 추정, 거래가격 배분 및 기간에 걸친 수익인 식 등 수익인식모형(5단계) 적용
- ②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재화나 용역의 매출), 채권 잔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축실하게 공시
 - *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등 포함

회계오류 예시

- C사는 새로 진출한 바이오사업에서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제품이 생산되거나 출고되기 전에 판매대리점 □□사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 특수관계자 甲사와 거래처 乙을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 □□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 매출을 은폐
- ② D사는 미국 소재 특수관계자 丙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면서 丙사가 보관중인 장기 (3~5년) 미판매 위탁제품(의료기기)를 인수하도록 하여 매출로 일시에 회계처리하였으나.
- ①제품 특성상(표준규격 이외 스펙) 판매가능성이 낮고, ②기존 매출채권이 연체되고 있으며, ③판매대금 회수시기가 불명확*하는 등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과대계상
 - * D사가 지급결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丙사가 정하도록 함

3.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 (선정배경) 주주간 약정(M&A, 자금조달 등)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석 등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여.
 - 新금융상품기준(K-IFRS 제1109호 및 제1107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관련 주석기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필요
- □ (대상업종)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 〈금융부채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분류코드*	해당 업종
C11000	음료 제조업
C250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0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F00000	건설업(41~42)
H00000	운수업(49~52)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또는 중분류 코드

- □ (선정기준) 부채비율 등 부채현황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 (회계처리 유의사항)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금융부채를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분류하여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후 속 측정

* 금융부채 분류(6가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 부채
- ❸ 금융보증계약
- ❹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⑤**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 6 기타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②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및 관련 약정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
 - * 금융부채 만기분석, 위험변수(이자율과 환율 등)로 인한 민감도 분석(최대 손실예상액), 금 융보증계약으로 인한 위험 노출액

회계오류 예시

- E사는 기존 농기계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PEF 甲사(사모투자합자회사)와 공동으로 SPC Z사를 설립하여 ◆◆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PEF 甲사에게 ◆◆사의 실적에 근거한 SPC 乙사의 기대수익률이 낮은 경우 보유중인 SPC 乙사 주식 전부를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❷ F사는 특수관계자 丙이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관련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③ G사는 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위해 거래처 丁에게 타 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어음(매출채권)을 배서하면서, 丁이 어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G사가 상환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관련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그대로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처리하여 금융부채를 과소계상

4.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 (선정배경)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어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또한,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고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하여 공시하려는 유 인이 존재하고,

최근 심사·감리 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 부문정보 공시도 점검 필요

(대상업종)	어조	여과서이	ココ	아이 수	어조으	미사
(ほろなな)	업돗	연선기	ユハ	않아 筆	업大도	내/汉

- □ (선정기준) 최근 영업이익 실적 및 재무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율 등) 비교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 (회계처리 유의사항)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 요구사항을 충 실하게 공시
- ①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
- ② 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기재
 - * 부문별 재무정보(당기손익 등) 및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고객별 수익금액 등

회계오류 예시

- H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별도기준)을 기록하게 되자 관리종목대상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H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자문료, 임차료 등)을 종속기업 ♥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처리)한 후 종속기업의 영업비용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 ② I사는 카지노 사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자 VIP고객 모집인 □□ 등에게 지급한 고객알선 마케팅 비용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바로 상각하는 방식으로 비용화하여 판매관리비인 지급수수료가 아닌 영업외비용인 기타대손상각비로 인식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 ❸ J사는 총 수익의 10% 이상을 매출한 주요 고객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사실과 해당 주요 고객별 매출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Ⅲ 향후 계획

- □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
- ㅇ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

히 안내하는 등 교육 · 홍보 강화를 통하여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

□ 금융감독원은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 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붙임 1 -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서는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와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 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에 대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외부정보(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 예상,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등)과 내부정보(자산의 진부화,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의 징후를 다양하게 고려
 -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 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 등을 기초로 회수가능액을 추정
-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서는 피투자자에 대해 "(1)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2)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에 모두 해당되면 투자자를 지배기업으로 본다고 규정
- □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면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으로 보며, 약정상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공동기업으로 규정
- □ K-IFRS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가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단계의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
 - * (5단계) ① 1단계 :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② 2단계 : 수행의무를 식별, ③ 3단계 : 거래가 격을 산정, ④ 4단계 : 거래가격을 계약내 수행의무에 배분, ⑤ 5단계 :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
- □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에서는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설정액, 대손상각비 등 포함)과 거래금액(재화의 매입이나 매출 등)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③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 공정가치로 인식한 후 다음을 제 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하도록 규정
 -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 정가치로 측정
 - ②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기는 금융부채. 이러한 금융부채는 양도 시 수취대가 혹은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로 인해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과 보증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을 고려하여 측정
 - ③ 금융보증계약.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개) 손실충당금
 - (내) 최초 인식금액에서 보증제공으로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최초 인식 후에 이러한 약정의 발행 자는 후속적으로 해당 약정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
 - (개) 손실충당금
 - (나) 최초 인식금액에서 대출로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⑤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에서는 제1109호에서 정의한 범주별로 장부금액을 주석에 공시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노출액, 남은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비파생금융부채 및 파생금융 부채 만기분석,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별(예 : 이자율과 환율) 민감도

분석 등 금융부채와 관련된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을 공시

④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 □ K-IFRS 제1108호(영업부문)에서는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다음의 통합기준과 양적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경영진이 유용한 부문정보라고 판단한다면, 각 영업부문에 대해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 등의 정보를 별도로 보고
 - (통합기준) 제품과 용역의 성격, 생산과정의 성격,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제품을 공급하 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규제환경의 성격 등
 - (양적기준) 부문수익(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수익(자산) 합계액의 10% 이상 등
 -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각 제품과 용역별, 지역별, 주요 고객별(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 대한 수익 등의 정보 공시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공시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1. 7

- ◈ 정기보고서내 흩어져 있는 유사한 주제의 공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통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 *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주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에 통합
- ◈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 등 일부 항목*을 세분화하 였습니다.
 - * 사업의 내용, 감사인의 감사의견,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사업의 내용에 요약정보를 추가하고 작성방식을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먼저 기술하고 이후 해당 산업 전체의 분석을 제공
- ◈ 정기보고서 본문에 기재하는 방대한 분량의 표*를 신설된 'XII. 상세표' 부분으로 이동하고, 본문에는 요약표만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 연결대상 종속회사, 계열회사 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사업의 내용중 관련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등
- ◈ 표로 작성하는 항목을 확대하여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자본금 변동 현황, 투표제도 현황, 계열회사 현황(요약),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등

1. 배 경

□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

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이용 추세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 고객예탁금 잔액 추이: 27조원('19년말)→66조원('20년말)→69조원('21.7.1기준)
- ** 이용건수: 64백만건('19년)→82백만건('20년)→44백만건('21년상반기)
- □ 이러한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년 확충되었으나, 전체적인 통일성이 저하되고 과도한 분량*으로 인해 투자자가 활용하기 다소 부담스럽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 시총상위 10개사(우선주 제외)의 '20년도 사업보고서는 평균 357페이지임
 - 특히, '사업의 내용'의 경우 도입부에 기술된 방대한 분량의 산업 분석과 여러 페이지에 걸 친 복잡한 표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 □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금년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사업보고서 편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 * 공시항목의 분류체계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고, 중복되거나 연관된 항목은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
 - 금융감독원은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정기보고서의 전반적인 서식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비. 주요 개정내용

① 상호 관련된 공시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 (현행) 유사한 작성항목이 정기보고서내 여러 곳에 산재하여 투자자가 내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개정안)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투자자가 종합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 유사항 항목의 분산 기재

☑ 유사한 항목의 통합 기재

► (Ⅱ. 회사의 개요) 신주발행소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채무증권 발행 실적
(Ⅺ. 기타 투자자 보호 사항) 다 적과 사용실적으로 구분)

▶(| . 회사의 개요) 의결권 현황
(\(\mathbb{V}\).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투표제도·소수주주권·경영권·경쟁,
(\(\mathbb{V}\). 주주에 관한 사항) 주식사무
(\(\mathbb{X}\). 기타 투자자 보호 사항) 주총 의사록

▶(| . 회사의 개요) 배당에 관한 사항

▶(VI.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3. 주주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에 통합

다

당 ▶(Ⅲ. 재무에 관한 사항) 6. 배당에 관한 사항

② 효과적인 정보 접근을 위한 세분화된 메뉴 제공

- (현행) 일부 공시항목의 경우 기재사항이 복잡·방대함에도 정기보고서 목차에 단일 메뉴로 만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가 필요한 세부항목을 찾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개정안) 정기보고서 메뉴에 세분화된 목차 항목을 신설하여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메뉴 제공 🔻 🖸 의미단위별로 세분화된 메뉴 제공

▶ II. 사업의 내용		▶ II. 사업의 내용			
		〈제조 서비스업〉	〈금융업〉		
		1.사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2. 주요제품 / 서비스	2. 영업의 현황		
		3. 원재료 / 생산설비	3. 파생상품거래 현황		
		4. 매출 / 수주상황	4. 영업설비		
		5. 위험관리 / 파생거래	5. 재무건전성 등		
		6. 주요계약 / 연구개발활동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 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Rightarrow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XI.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 XI.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③ '사업의 내용' 작성 방식을 변경

○ (현행) 기존 사업의 내용은 회사가 속한 산업을 먼저 설명하고 기업의 세부 사항은 후술하

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재되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 (개정안) 도입부에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사업의 내용을 신속 하게 파악하도록 보완하였으며,
 - 산업 분석은 마지막 부분(기타 참고사항)에 배치(상향식 분석, Bottom-up)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ightarrow

☑ Top-Down 방식의 서술

Bottom-Up 방식의 서술

□ Bottom-Up 방식의 서술

□ Bottom-Up 방식의 서울

□ Bottom-Up 망식의 서울

□ Bottom-Up 망식의 서울

□ Bottom-Up 망식의 서울

□ Bottom-Up 망식의 사용

□ Bottom-Up Representation

□ Bottom

- ▶ 11. 사업의 내용
 - 1. 사업의 개요
 - 산업의 특성, 국내외 시장여건, 회사의 경쟁력 등
- ▶ 11. 사업의 내용
 -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내용 요약(신설)
 - 7. 기타 참고사항
 - 산업의 특성, 국내외 시장여건 등

④ 상세표(Appendix) 항목 신설

- (현행) 연결대상 종속회사, 계열회사 현황 등 일부 표의 경우 여러 페이지에 걸쳐 표시되어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개정안) 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 본문에는 요약정보만을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 상세표(Appendix)' 항목에 기재하도록 하여 정기보고서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상세), 계열회사 현황(상세),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사업의 내용중 관련 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
 - ※ 정기보고서 본문의 요약표에서 Ⅲ. 상세표(Appendix)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은 '21년도 3 분기 보고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5 표 작성항목 확대

- (현행) 정기보고서는 서술식 기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단순 열거하는 항목의 경우 표 작성방식에 비해 읽기가 어렵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낮은 한계가 있습니다.
- (개정안) 표 작성항목*을 확대하여 투자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간 비교도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I.회사의 개요) 연결대상 종속회사(요약),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자본금 변동 현황
 - (VI.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투표제도 현황
 - (IX.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Ⅲ. 시행일 및 기대효과

- □ (시행일) 개정서식은 '21.7.16일부터 시행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21년도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대효과) 정기보고서 체계를 보다 통일성있게 개선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 세부메뉴 신설, 다양한 요약표 제공, 상세표 항목 신설 등을 통해 정기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16일(금)	7월 19일(월)	7월 20일(화)	7월 21일(수)	7월 22일(목)
	딭		러 (USD)	1143.70	1141.10	1145.70	1151.00	1150.60
일	브	르	엔 (JPY)	1041.48	1037.60	1046.25	1047.41	1043.30
영	국 ፲	나 운	드 (GBP)	1581.62	1570.55	1566.17	1568.64	1577.93
캐	나 [나 달	러 (CAD)	908.06	904.45	898.73	907.76	915.94
홍	콩	달	러 (HKD)	147.23	146.89	147.43	148.09	148.02
위	Ę	<u> </u>	화 (CNH)	177.01	176.45	176.67	177.26	177.59
유	Ē	2	화 (EUR)	1351.11	1347.81	1351.24	1355.99	1356.73
호	주	달	러 (AUD)	849.37	843.67	841.12	843.86	846.55
싱	가 플	를 달	러 (SGD)	844.43	841.08	839.83	842.39	843.80
말	레이시	아링	기트 (MYR)	272.15	271.08	271.20	272.46	271.85